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KOREA 4.0
사람 중심의 4차산업혁명 실현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제재조치 가이드라인 개정안 배포

1. 관련
   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서 제27조의5까지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R&D 참여제한 등 제재 관련 사항을 부처별 법령에서 각각 정하고 있어, 범부처 차원에서 운영의 일관성을 기하고자 2015년 제재조치 매뉴얼을 배포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기존 '제재조치 매뉴얼'의 명칭을 '제재조치 가이드라인'으로 변경하고 제재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여 첨부와 같이 개정하오니 향후 제재조치 업무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81219_국가연구개발사업제재조치가이드라인(2018.12). 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인

수신자 본부(각 과), 중앙행정기관, 산하 공공기관 (부설포함), 대학교

행정사무관 **정재헌** 연구제도혁신과장 전결 2018.12.19. **이재흔**

협조자

시행 연구제도혁신과-1802 (2018. 12. 19.) 접수

우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중앙동) 301호 / http://www.msit.go.kr

전화번호 02-2110-1681 팩스번호 02-2110-0262 / jsyall@msit.go.kr / 대국민 공개